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62
----------	-----

2017. 3. 3. (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17년 2월 13일

다. 회부일자: 2017년 2월 15일

라. 상정일자: 2017년 3월 2일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관 김성곤)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가 필요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16건을 현행 법령 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
-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 행정기구 개편 반영
-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 인용 법령 등의 제명 및 조항 변경
-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행정기구 개편 반영
-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반영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의 개정
 - 행정기구 개편 반영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반영
-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의 개정
 -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반영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반영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인용 법령 등의 제명 변경
 - 행정기구 개편 반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반영
 -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개정 반영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행정기구 개편 반영
-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반영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반영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
 - 행정기구 개편 반영
-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행정기구 개편 반영
-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반영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에 대해 인용 조례 및 법령의 제명 변경과 조항 변경,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과학직업교육과장”을 “과학국제문화과장”으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간사와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 및 직원”을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5조(「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로 한다.

제8조(「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9조(「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0조(「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도서관, 학생회관, 교직원복지회관, 영어체험센터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를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학생수용계획”을 “학생배치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3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근로자”를 각각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6조제9호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11조(「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가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영동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수련원(영동휴양소)”으로 한다.

별표의 다의 제천시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제천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수련원(제천야영장)”으로 한다.

별표의 라의 진천군의 문백면 농다리로 536-41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을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한다.

제12조(「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산촌교육발전지역교육청협의회(이하 “지역교육청협의회”라 한다)”를 “농·산촌교육발전교육지원청협의회(이하 “교육지원청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지역교육청협의회”를 “교육지원청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3조(「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역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국가재정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14조(「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을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을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을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을 “직속기관 분관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을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을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중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을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보령)”으로 한다.

별표 4의2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을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보령)”으로 한다.

별표 4의2의 제1호 중 “교육원장”을 “수련원장”으로 한다.

별표 4의3의 제목 중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을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제주)”으로 한다.

별표 4의3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을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제주)”으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 중 “교육원장”을 “수련원장”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을 “직속기관 분관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5의 기관명란 중 “중원도서관”을 “미원도서관”으로, “청원도서관”을 “중원도서관”으로 한다.

제15조(「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6조(「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열람 및 복사)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u>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u>」에 따른다.</p>	<p>제8조(열람 및 복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u>」----- ----.</p>

2.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 설치)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u>과학직업교육과장</u>,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p> <p>2.·3. (생략)</p> <p>④ ~ ⑥ (생략)</p>	<p>제6조(위원회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u>과학국제문화과장</u>----- -----</p> <p>2.·3.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3.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u>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u> 제2조 및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p> <p>5. “개인정보”라 함은 <u>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u>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p> <p>6. (생략)</p> <p>7. “업무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u>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u>에서 정한 분장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관·과장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민원처리에 관한 법률</u>」 ----- ----- ----- ----- -.</p> <p>5. ----- 「<u>개인정보 보호법</u>」 제2조제1호----- -----.</p> <p>6. (현행과 같음)</p> <p>7. ----- ----- 「<u>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u>」 ----- ----- ----- -.</p>

6.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u>행정관리국장</u> 과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 ⑥ (생략)	제12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행정국장</u> ----- -----. ④ ~ ⑥ (현행과 같음)

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u>지역교육청</u> 과 그 소속기관, <u>초·중등교육법</u> 제2조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 <u>교육지원청</u> ----- ----- 「 <u>초·중등교육법</u> 」----- ----- -----.

8.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u> 」 제4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제1조(목적) -----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 -----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과 보조기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공립의 각급 학교, 회계관계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이하 “각급 기관”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제9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課)·담당관 등(이하 “처리과” 라 한다)의 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제9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9.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교육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u>지역교육청</u> 소속 기관과 <u>지역교육청</u> 소속 각급학교는 해당 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추천한다.</p> <p>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u>지역교육청</u>은 국장·과장) 및 <u>지역교육청</u>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p> <p>③·④ (생략)</p>	<p>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 ----- ----- ----- <u>교육지원청</u> ----- <u>교육지원청</u> - ----- ----- -.</p> <p>② -----<u>교육지원청</u>-----<u>교육지원청</u>----- <u>교육지원청</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본청 직속기관 및 <u>지역교육청</u>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 <u>교육지원청</u> ----- ----- ----- ----- -----.</p>

10.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발신 명의)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p>	<p>제4조(발신 명의)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p>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도서관, 학생회관, 교직원복지회관, 영어체험센터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일반직 6급(전문경력관의 경우 나군)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보직부여·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퇴직·대우공무원선발·시보임용기간만으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경징계</p>	<p>5. -----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 ----- ----- ----- -----</p>
<p>6. ~ 11. (생략)</p>	<p>6. ~ 11. (현행과 같음)</p>
<p>12. 관할학교의 학생수용계획 수립</p>	<p>12. ----- 학생배치계획 -----</p>
<p>13. ~ 30. (생략)</p>	<p>13. ~ 30. (현행과 같음)</p>
<p>31.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p>	<p>3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p>

용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관내 전보·임지지정·휴직·복직·해고·징계

나.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 8. (생략)
9. 소속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략)
7. 소속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

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
-----교육공무직원-----

가. -----

교육공무직원-----

나. -----
-- 교육공무직원-----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

1. ~ 8. (현행과 같음)
9. --- 교육공무직원-----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

1. ~ 6. (현행과 같음)
7. --- 교육공무직원-----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현 행

[별표]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제2조 관련)

□ 벽지

등급	시·군	위치	기관명
가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영동학생야영장)
나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9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
다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제천학생야영장)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7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단성면 선암계곡로 1092	단천초등학교가산분교장
	대강면 온천로 719-7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	
라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58번길 301	용담초등학교현양원분교장
		상당구 미원면 운암계원로 601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충주시	양성면 학교말2길 50	강천초등학교
		대소원면 매현새터2길 10	달천초등학교매현분교장
	제천시	백운면 화당로 33	화당초등학교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한송초등학교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한송중학교
	보은군	마로면 세종1길 2	세중초등학교
		회남면 회남로 1901-1	회남초등학교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3-2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동이면 우산로2길 23	동이초등학교우산분교장
	영동군	용화면 용화양강로 32	용화초등학교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문백면 농다리로 536-43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오가5길 1	장연초등학교
		청천면 송면2길 13	송면초등학교
		청천면 문장로 2915	송면중학교
	단양군	가곡면 대대길 51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
		어상천면 어상천로 930	어상천초등학교
		어상천면 어상천로 904	단산중학교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	별방초등학교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	별방중학교
영춘면 온달평강로 63-6		영춘초등학교	
영춘면 온달평강로 105		영춘중학교	
적성면 적성로 453		대가초등학교	

개 정 안

[별표]

특수지급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제2조 관련)

□ 벽지

등급	시·군	위치	기관명
가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
나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구별길 9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
다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야영장)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7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단성면 선암계곡로 1092	단천초등학교가산분교장
대강면 온천로 719-7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	
라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58번길 301	용담초등학교현양원분교장
		상당구 미원면 운암계원로 601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충주시	양성면 학교말2길 50	강천초등학교
		대소원면 매현새터2길 10	달천초등학교매현분교장
	제천시	백운면 화당로 33	화당초등학교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한송초등학교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한송중학교
	보은군	마로면 세종1길 2	세종초등학교
		회남면 회남로 1901-1	회남초등학교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3-2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동이면 우산로2길 23	동이초등학교우산분교장
	영동군	용화면 용화양강로 32	용화초등학교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문백면 농다리로 536-43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오가5길 1	장연초등학교
		청천면 송면2길 13	송면초등학교
		청천면 문장로 2915	송면중학교
	단양군	가곡면 대대길 51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
		어상천면 어상천로 930	어상천초등학교
어상천면 어상천로 904		단산중학교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		별방초등학교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		별방중학교	
영춘면 온달평강로 63-6		영춘초등학교	
영춘면 온달평강로 105		영춘중학교	
적성면 적성로 453		대가초등학교	

12.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산촌”이란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용어정의) ----- -----.</p> <p>1.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p> <p>2.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생략)</p> <p>② <u>지역교육청</u>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작은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5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교육지원청</u>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사업 심의) ①·② (생략)</p> <p>③ 교육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농·산촌교육발전지역교육청협의회</u>(이하 “<u>지역교육청협의회</u>”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제6조(지원사업 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농·산촌교육발전교육지원청협의회</u>(이하 “<u>교육지원청협의회</u>”라 한다)----- -----</p>

제7조(예산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되,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작은학교가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도 협의회 및 지역교육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외에 위촉위원 및 임명위원에 는 농·산촌지역의 학교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대표, 도 및 농·산촌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예산지원) ① -----

----- 교육지원청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 교육지원청협의회 -----

----- . -----

----- 교육지원청 -----

-----.

② (현행과 같음)

1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무원직장협의회</u>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1조(목적) ----- 「 <u>공무원직장협의회</u>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교육청 본청, 직속 기관, 지역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단위를 말하며, 국·과 및 담당관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의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를」-----

-.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 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제3조(협의회의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 8. (생략)
- ② ~ ④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지방공무원 임용령」 -----

3. -----
----- 「국가재정법」·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4. ~ 8.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14.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u>「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u> 에 따라 설치된	제2조(정의) ----- -- <u>「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u> -----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 이
라 한다)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① (생 략)

②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은 수
련기관 공동사용을 위해 타 시·
도교육감과 협약 체결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조(사용료 징수금액) ① 충청북
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
문화원,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
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충청
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 충청북도
교육청제주교육원의 사용료 징수
금액은 각각 별표 1에서 별표 4의
3과 같다.

②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제천
학생회관,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
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별
표 5에서 별표 8과 같다.

-----.

제3조(사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충청북도학생수련원-----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료 징수금액) ① -----

충청북도학생수련원-----
----- 충청북도학생해양
수련원-----
-----.

② 직속기관 분관 도서관 및 교육
지원청 소속 도서관-----

-----.

[별표 3]

현 행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 학생종합 수련원	수련시설		무료	무료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콘도	4~6인실	1,000원	20,000원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 수련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10인실	1,000원	30,000원	40,000원	
	강당		무료	무료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 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세미나실		무료	무료	50,000원		
개인텐트설치		무료	무료	1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동 1박 기준 	

1. 본 표 중 학생,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수련원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2.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1호에 준함.
3. 대학생과 1호 및 2호 이외의 학생은 기타에 준함.

개 정 안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 학 생 수 련 원	수련시설		무료	무료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콘도	4~6인실	1,000원	20,000원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 수련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10인실	1,000원	30,000원	40,000원	
	강당		무료	무료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세미나실		무료	무료	50,000원	
	개인텐트설치		무료	무료	10,000원	

1. 본 표 중 학생,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수련원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2.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1호에 준함.
3. 대학생과 1호 및 2호 이외의 학생은 기타에 준함.

[별표 4의2]

현 행

충청북도교육정보명교육원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 교육정보 명교육원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수련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콘도	5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강당		무료	무료	50,000원	

1. 본 표 중 학생·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교육원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개 정 안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보령)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 학생해양수 련원 (보령)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수련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콘도	5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강당		무료	무료	50,000원	

1. 본 표 중 학생·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수련원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별표 4의3]

현 행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 교육청 제 주 교육원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체험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큰도	4~6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10인실	-	30,000원 (40,000원)	40,000원 (50,000원)	
	다목적실		무료	무료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세미나실		무료	무료	50,000원	

1. 본 표 중 학생·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교육원장**이 허가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개 정 안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제주)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 학생해양 수련원 (제 주)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체험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큰도	4~6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10인실	-	30,000원 (40,000원)	40,000원 (50,000원)	
	다목적실		무료	무료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세미나실		무료	무료	50,000원	

1. 본 표 중 학생·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수련원장**이 허가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별표 5]

현 행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2항 관련)					
기관명	구분		징수액	비고	
<u>중원도서관</u> <u>청원도서관</u> 보은도서관 옥천도서관 영동도서관 진천도서관 괴산도서관 증평도서관 음성도서관 금왕도서관 단양도서관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디지털자료실)	흑백	A3-B4	80원	1매당
			A4-B5	50원	"
		칼라	A4-B5	500원	"
	시설사용료 (회의실, 전시실 등)			20,000원	1일기준

개정안					
직속기관 분관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2항 관련)					
기관명	구분		징수액	비고	
<u>미원도서관</u> <u>중원도서관</u> 보은도서관 옥천도서관 영동도서관 진천도서관 괴산도서관 증평도서관 음성도서관 금왕도서관 단양도서관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디지털자료실)	흑백	A3-B4	80원	1매당
			A4-B5	50원	"
		칼라	A4-B5	500원	"
	시설사용료 (회의실, 전시실 등)			20,000원	1일기준

15.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설치)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u>교육국장</u> 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⑤ (생략)	제9조(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행정국장</u> ----- ----- ----- ----- ④·⑤ (현행과 같음)

16.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중기기 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u>지역교육청</u> <u>교육장</u> (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 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중기기본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4조(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중기기 본계획 수립) ----- <u>교육지원청</u> ----- ----- ----- ----- ----- ----- 1.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1.] [법률 제14398호, 2016.12.20., 일부개정]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 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개정 2013.12.30.>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생년월일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0.30.]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6.9.1.] [충청북도조례 제3947호, 2016.7.29., 일부개정]

제5조의2(국의 설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06.4.7., 2012.6.29., 2016.7.29.>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13., 2009.8.7., 2012.6.29., 2012.12.28., 2016.7.29.>

1. 교육과정의 운영 및 지도
2.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및 지도
3. 장학지도,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4.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
5.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의 자격·인사·교육·복리에 관한 사항
6.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7. 과학 및 산업교육에 관한 사항
8. 교육행정 전산화 및 교육정보화 계획수립 및 지원
9. 평생교육의 진흥
10.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11.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2. 학교보건 관련 업무
13.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
14. 직속기관에 대한 지원과 운영지도
15. 학부모 정보제공 및 상담·고충처리 지원
16. 방과후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6.7.29.>
18.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19. 교원 단체 관련 업무
20.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5.2.16.>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7., 2012.6.29., 2012.12.28., 2016.7.29.>

1. 삭제 <2012.6.29.>
2. 삭제 <2012.6.29.>
3. 삭제 <2012.6.29.>

4.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
6. 학생배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2.6.29.>
8.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6.7.29.>
10. 행사·문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정원에 관한 사항
1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교육·복리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6.7.29.>
14. 삭제 <2016.7.29.>
15. 직장 민방위에 관한 사항
1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6.7.29.>
19. 행정권한 이양 및 위임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12.6.29.>
21. 비상사태와 재난대비 및 위기관리 업무
22.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3. 장학금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2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② 삭제 <2015.5.15.>

[제목개정 2016.7.29.]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1.] [충청북도교육규칙 제738호, 2016.12.30., 일부개정]

제7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유치등교육과·중등교육과·진로직업특수교육과·과학국제문화과·체육보건안전과를 둔다.

② 교육국장·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과학국제문화과장 및 체육보건안전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행정과·재무과·교육복지과·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재무과장·교육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